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4일

경상북도지사

1. 행정처분 내용

업체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주식회사대왕건설 (송은선)	건축공사업 (16-0837)	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165, 2층	기재사항변경 신고지연 (대표자, 소재지 변경)	과태료 부과 (금18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(우동영)	토목공사업 (16-0893)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15, 2층	「건설공사대장 미통보」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신월리 하수관로공사 및 포장공사	과태료 (금40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9조 제3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